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TDF2040 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
- 변경 사항: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②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 ③ 모투자신탁의 환헤지 비율 변경 (70%이상 → 60%이상)

□ 효력발생일 : 2023. 7. 13.

□ 변경 내용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	-	2023. 5. 31. 기준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업데 이트	-	2023. 6. 30. 기준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 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업데 이트	-	2023. 6. 30. 기준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자본시장법 및 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	(1)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)~9)의 투 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한 것으로 봄	(1)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)~9)의 투 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 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


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 준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정정	〈신 설〉 (2)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)~9)의 투 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 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한 것으로 봄	적합한 것으로 봄 <u>증권대차거래 목적 기재</u> (2)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)~9)의 투 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의한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 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 준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정정	〈신 설〉 (4)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 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)~9)의 투 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 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	<u>증권대차거래 목적 기재</u> (4)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 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)~9)의 투 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의한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 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
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합한 것으로 봄 〈신 설〉 (5)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8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적합한 것으로 봄 <u>증권대차거래 목적 기재</u> (5)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8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</u>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<u>증권대차거래 목적 기재</u> (6)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정정	〈신 설〉 (6)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(6)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(1)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</u>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	오탈자 정정	(2)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(2)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5)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	(5)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

	오탈자 정정	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(4)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/ (6)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(가) (생 략)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</u>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(4)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/ (6)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(가) (생 략)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]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☐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/ ☐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/ ☐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(2)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[기준일 : 2022.4.30 기준] [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] 2021.10 기준	☐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/ ☐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/ ☐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(2)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[기준일 : 2023.6.30 기준] [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] 2023.4 기준
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 험관리	모투자신탁의 환헤지 비율 변경	4) 환위험관리 ① 환헤지 전략 및 목표 헤지 비율 : (생 략) 환헤지 전략은 외화자산에 대하여 <u>70%</u> 이상 주1) 환헤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, 이 헤지비율은 시장 상황 및 운용 전략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화 간 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 다. 주1) 목표 헤지비율은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, 투자수단의 유용성에 따라 별도의 고지 없이 운용역의 판단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	4) 환위험관리 ① 환헤지 전략 및 목표 헤지 비율 : (생 략) 환헤지 전략은 외화자산에 대하여 <u>60%</u> 이상 주1) 환헤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, 이 헤지비율은 시장 상황 및 운용 전략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화 간 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 다. 주1) 목표 헤지비율은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, 투자수단의 유용성에 따라 별도의 고지 없이 운용역의 판단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 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5. 31. 기준</u>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업데 이트	-	<u>2023. 6. 30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6. 30 기준</u>